##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43 발의연월일: 2020. 12. 10.

발 의 자:이헌승·김형동·조명희

황보승희 · 홍석준 · 서병수

김성원 · 윤영석 · 한무경

주호영 • 문진석 • 이원욱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생활비용의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한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과「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의 경우 현행법상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부과율로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통사찰 등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생활편익시설로 볼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의주민을 위한 다른 생활편익시설 등과 다르게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부담금을 면제하여, 개발제한부담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		
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재보호	어O	어O
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	없음	없음
재		
나.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없음	100분의 50
기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	以	100단의 50
다.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	100 H ol 100	100분의 100
축	100七月 100	100단의 10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별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금이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